GEORGETOWN DIVIDE PUBLIC UTILITY DISTRICT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연체료

참고 문헌:

상원 법안 998: 주거용 수도 서비스 중단

캘리포니아 주정부법 60370 -60375.5 절

제 | 조. 목적

본 정책은 서비스 통지, 요금 부과 및 서비스 중단을 포함하여 체납 계정 징수를 위한 Georgetown Divide Public Utility Water District의 행정 조치를 열거합니다. 본 정책은 District의 웹사이트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됩니다. 본 정책의 약관에 따라 요금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District((530) 333-4356)로 전화하십시오.

제 II 조. 정책

제한된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민간 영리 기능의 지역 성과를 위해 일반법에 따라 특별 지구로 형성된 주정부 기관인 Georgetown Divide Public Utility District는 체납 계정의 징수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법 60370 - 60375.5절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200 개 이상의 서비스 연결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도시 또는 지역 사회 수도 시스템으로서 District는 2020년 2월 1일 발효되는 상원 법안 998 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1. 정책의 적용. 본 주거용 수도 서비스 정책 및 절차(본 "정책")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위한 모든 Georgetown Divide Public Utility District("<u>District</u>") 계정에 적용되지만 비 주거용 서비스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이 Georgetown Divide Public Utility District 조례, 결의안 또는 District의 다른 규칙, 규정 또는 정책의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본 정책이 우선합니다.
- 2. 연락처 정보. 수도 요금과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District의 공공 요금 청구 담당자에게 전화 (530) 333-435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District의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District를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다음 주소의 District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도 제공됩니다. GD-PUD.ORG
- 3. 청구 절차. 수도 서비스 요금은 2개월에 한 번 District에 지불해야 합니다. 수도 서비스에 대한 모든 청구 요금은 청구서 수령 후 지불해야 하며 다음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됩니다. 1) 청구서의 서비스 기간의 마지막날 또는 2) District가 청구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개월 후
- 4. 미**납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청구 요금 납부가 60일 이상 체납되는 경우 District는 서비스 주소에 대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4.1 <u>고객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u> District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10일 전에 등재된 고객에게 우편으로 통지를

2020년 1월 14일 채택 페이지 1 / 9

발송합니다.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고객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 금액
- (c)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약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짜
- (d) 고객이 연장, 분할 납입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이 포함될 수 있는 대체 지불 약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설명
- (e) 청구서 검토 및 항소 청원 절차에 대한 설명
- (f) 고객이 지불 약정을 요청하거나 District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전화 번호
- 4.2 <u>입주자 또는 세입자에게 보내는 서면 통지.</u> District가 마스터 계량기를 통해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이동 주택 공원 또는 농장 노동자 숙소에 개별적으로 계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등재된 고객의 우편 주소가 서비스 주소와 다른 경우 District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10일 전에 입주자에게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는 "입주자"의 주소로 발송되고, 위의 4.1 절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며, 체납 계정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District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음을 입주자에게 알립니다. 입주자가 District의 고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 8 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4.3 서비스 주소에게 보내는 통지 게시. 서면 통지가 우편을 통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고 고객 또는 거주지에 입주 중인 성인과 전화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District는 해당 거주지를 방문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서비스 주소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주거용 서비스의 중단이 임박했을 알리는 통지를 남길 것입니다. 이 통지는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기 최소 48 시간 전에 거주지에 부착됩니다. 통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고객의 이름과 주소
 - (b) 체납 금액
 - (c)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약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짜

- (d) 청구서 검토 및 항소 청원 절차
- (e)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재정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절차
- (f) 고객이 지불 약정을 요청하거나 District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전화 번호

4.4 <u>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상황.</u> District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미납으로 인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a) 아래 5.1 절에 따른 고객 분쟁 또는 불만에 대한 District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 (b) 아래 5.3 절에 따른 이사회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 (c) 아래 6 절에 따라 고객의 지불에 District가 승인한 연장, 할부 납입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이 적용되고 고객이 승인된 지불 방법을 준수하는 기간 동안
- 4.5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특수한 의료 및 재정 상황.
 - (a)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District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i)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가 수도 서비스의 중단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주거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물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면허가 있는 1차 의료 제공자의 증명서를 District에 제출하고
 - (ii) 고객이 District의 정상적인 청구 주기 내에 주거용 수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고객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상적인 청구 주기 동안 지불을 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고객의 가족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주 정부지원금 프로그램 또는 여성 및 영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의 수혜자이거나 (b) 고객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퍼센트 미만임을 선언하였고

- (iii) 고객이 체납 요금과 관련하여 연장, 분할 납입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을 포함한 대체 지불 약정을 기꺼이 체결하는 경우
- (b)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고객에게 District는 재량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 지불 기간의 연장 또는 (2) 대체 지불 일정 또는 미납 잔액의 분할 납입 District 관리자 또는 피지명인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서류와 District의 지불 요구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지불 약정을 선택합니다.
- (c) 고객은 (a)항의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 날짜로부터 최소 48 시간 전에 District에 제공해야 하는 서류를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면 District는 7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District가 선택한 대체 지불 약정을 고객에게 알리고 서명을 포함하여 해당 대체 지불 약정에 참여한다는 고객의 동의를 요청하거나 (2)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3) (a)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고객에게 알립니다. District는 재량에 따라 고객의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d) 본 절에 따라 대체 지불 약정을 허가 받은 고객이 60일 이상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지 않을 경우 District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a) 연장된 지불 날짜까지 미납 요금을 지불
- (b) 대체 지불 일정 또는 분할 납입 합의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 지불 또는

페이지 4 / 9

(c) 수도 서비스에 대한 현재 요금 지불

2020년 1월 14일 채택

District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 5일 전에 서비스 주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최종 통지를 게시합니다. 최종 통지가 게시되면 고객은 District에게 조사 또는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 4.6 <u>서비스 중단 시간.</u> District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District의 사무실이 일반에게 개방되지 않는 때에는 미납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4.7 <u>서비스의 복구.</u> District는 수도 서비스가 중단된 고객에게 주거용 서비스 복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이 서비스 복구와 관련하여 전화를 통해 또는 직접 District에 연락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복구를 위해서는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a) 해당 이자 또는 벌금을 포함한 모든 미납 금액, (b) 해당되는 경우 7.1 절의 제한에 따른 모든 재연결 비용 및 (c) District에서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

5.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항소 절차.

- 5.1 <u>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시간.</u> 고객은 문제가 되는 청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청구서 금액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5.1 절의 목적을 위해서만 청구서는 우편 발송으로부터 5일 후에 고객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5.2 <u>District의 검토.</u> 기한 내에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 요청을 할 경우 District 관리자는 검토를 하여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토에는 6 절에 따라 고객이 연장, 분할 납입 또는 대체 지불 일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 5.3 <u>이사회에의 항소.</u> 5 절에 따라 기한 내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한 고객은 District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District가 결정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District 총무에게 서면으로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서를 받은 District 총무는 이 문제를 다가오는 이사회회의에서 심리할 안건으로 정하고 회의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심리 시간과 장소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고객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사회의결정은 최종적입니다.

2020년 1월 14일 채택 페이지 5 / 9

- 6. 연장 및 기타 대체 지불 약정.
 - 6.1 연장 또는 기타 대체 지불 약정을 요청할 시간. 정상적인 지불기간 동안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고객은 본 6 절에 설명된 연장 또는 기타 지불 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strict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서면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12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을 제출한 경우 District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검토합니다. 연장 및 기타 대체 지불 약정에 대한 District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해 이사회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 6.2 연장. District가 승인하는 경우 고객의 미납 잔액 지불 기한은 원래의 잔액 납입 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District 관리자 또는 피지명인은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될 연장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은 District가 설정한 날짜까지 미납 잔액을 전액 지불해야 하며 이후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서비스 요금을 연체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연장된 지불 날짜는 서면으로 제시되어고객에게 제공됩니다.
 - 6.3 <u>대체 지불 일정 또는 분할 납입.</u> District가 승인한 경우 고객은 District 관리자 또는 피지명인이 재량으로 결정한대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 지불 일정 또는 분할 납입에 따라 미납 잔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승인될 경우 대체 지불 일정은 District가 정한 지불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정기적인 일시불 지불을 허용하거나 District의 정기적 지불 날짜보다 더 또는 덜 자주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입이 승인된 경우 미납 잔액은 분할 납입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지며, 해당 금액은 완전한 납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객의 수도 서비스 월 청구서에 추가됩니다. 대체 지불 일정 또는 분할 납입 기간 동안 고객은 이후 청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도 서비스 요금을 연체 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대체 지불 또는 분할 납입 일정과 지불해야 할 금액은 서면으로 제시되어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 6.4 <u>미준수.</u> 원래 지불해야 할 요금이 60일 이상 체납되고 대체 지불 약정을 허가 받은 고객이
 - (a) 연장된 지불 날짜까지 미납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 (b) 대체 지불 일정 또는 분할 납입 일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District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District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기 최소 5일 전에 서비스 주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최종 통지를 게시합니다. 최종 통지가 게시되면 고객은 District에게 조사 또는 검토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없게 됩니다.
 - 6.5 <u>지불 감면 또는 면제.</u> 저소득층 고객은 기본 요금의 25 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District의 저소득층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채택

- 7. 저소득층 고객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
 - 7.1 <u>재연결 요금 한도 및 이자 면제.</u>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퍼센트 미만임을 District에 입증한 고객에 대해 District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a) 재연결 요금을 정상 작동 시간 동안 \$50, 비 작동 시간 동안 \$150로 제한합니다. 이 한도는 District의 재연결 요금이 실제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도시소비자에 대한 노동 통계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U)의 변화에 맞게 매년 조정됩니다.
 - (b) 12 개월마다 한 번씩 체납 청구서에 대한 이자 비용을 면제합니다. District는 고객의 요청시 지불되지 않은 모든 이자 비용에 대해 면제를 적용합니다.
 - 7.2 <u>자격.</u> Distric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객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퍼센트 미만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a) 고객의 가족 구성원이 현재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주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 또는 여성 및 영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주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의 수혜자이거나 (b) 고객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퍼센트 미만임을 선언한 경우

8. 입주자 또는 세입자가 District 고객이 되는 절차

- 8.1 <u>적용 가능성.</u> 본 8 절은 주거용 서비스 주소의 부동산 소유자, 집주인, 관리자 운영자가 등재된 고객으로 등재되어 있고 미납으로 인해 수도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8.2 <u>District 서비스 조건에 대한 동의.</u> District는 각 입주자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District의 규칙과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실제 주거지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주자 중 한 사람 이상이 District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후 해당 계정에 발생한 요금에 대하여 책임질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District의 규칙과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에게 서비스 공급을 선택적으로

2020년 1월 14일 채택 페이지 7 / 9

중단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District에게 있는 경우, District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8.3 임차 확인. 체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고객으로 남을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체납 계정에 등재된 고객이 현재 또는 과거에 집주인, 관리자, 또는 주택 임대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주자가 검증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 증거는 임대 또는 대여 계약서, 임대 영수증, 입주자가 해당 건물을 임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서류, 또는 District의 자유 재량에 따라 시민법 1962절에 의거해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8.4 <u>신용 확립 방법.</u> District와의 신용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면, 거주 허가를 받은 것과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즉각 지불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것으로도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9. 부도 수표에 대한 절차

9.1 부도 수표 처리 통지. 수도 서비스 요금이나 기타 요금으로 납부받은 수표가 부도 수표인 경우, District는 해당 계정을 체납 계정으로 간주합니다. District는 부도 수표를 고객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알리기 위해 합당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부도 수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48 시간 통지가 생성됩니다. 통지 방법은 고객이 선택한 통지 기본 설정(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을 기반으로 합니다. 통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District는 거주지를 방문하여 서비스 중단 고지서를 남기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부도 수표의 금액과 부도 수표에 대한 비용을 서비스 중단 고지서에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부도 수표를 상환하고 부도 수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금액은 현금, 신용 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9.2 이전에 중단된 서비스에 대한 부도 수표.

고객이 이전에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수도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지불 수단으로 양도 불능 수표를 제출하고 District가 서비스를 복구한 경우, District는 추가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 수 있습니다. 중단될 수도 요금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양도 불능 수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에 대한 48 시간 통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채택 페이지 8 / 9

미납으로 인해 중단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한 지불 수단으로 양도 불능수표를 발행한 고객은 수표가 반환된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향후 서비스 중단을 복구하기 위해 현금, 신용 카드 또는 인증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0. 특정 서면 통지의 언어. 4 절에 따른 모든 서면 통지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한국어 및 District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10 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됩니다.
- 11. 기타 구제책. 수도 서비스 중단뿐 아니라 District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신청을 통한 체납 금액 확보, 청구 또는 법적 소송 제기, 또는 추심 기관에 미납 금액 회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수도 서비스 요금 미납에 대해 법률 또는 형평법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 District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경우, District는 변호사 비용 및 누적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경비를 지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2. **기타 고객 위반으로 인한 수도 서비스 중단.** District는 미납 이외에도 District 조례, 규칙 또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채택 페이지 9 / 9